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중앙정부, 통합적 보호체계 중심의 노숙인 대책 수립

01 주요 내용

- 범정부 차원의 노숙인 대책이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16.2.3.)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2.6)에 따른 조치로 마련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년~2020년)' 은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과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
 - 이번 계획은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사후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 지원 → 사회복귀라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

• 노숙인 복지정책의 원칙

-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노숙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 추진
- 소득,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 다양한 경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보호의 원칙 준수
- 기존 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의 원칙(대규모 시설 → 소규모시설 → 주거지원으로 단계적 전환)

• 총 4개 분야, 13개 과제별 세부 내용

- 중앙정부 5개, 중앙·지자체 공동 6개, 지자체 19개 사업 실시

1.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확립 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공적·민간자원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연계 홍보강화 ② 효과적인 아웃리치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제공 및 계획 수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리노숙인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⑤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활성화
2.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의 구축 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②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강화	3.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②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련서비스와 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 우선지원	4.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①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② 협의체 기반의 정책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input type="checkbox"/> 중앙-지자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input type="checkbox"/>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소관부서 표기:
 중앙정부 단독
 중앙·지자체
 지자체 단독

2.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01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15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2년 후 시행
 -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입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어온 직업재활사를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기존 직업재활사는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특례 시험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민간자격의 직업재활사*는 2014년 말 기준 4,594명으로, 장애인복지관 전체 직원의 5.4%, 직업재활시설 직원의 약 17% 정도가 직업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조사
- 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직업상담 및 재활상담, 직업평가 및 진로지도,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방향설정, 직무지도 및 개발,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를 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

1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사회복지관련 국가자격은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등이 있으며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자격 도입은 장애인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함
- 최근 사회복지 관련 민간자격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추세로,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제도의 활성화와 질관리가 중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수화통역사(소관 :보건복지부), 주거복지사(소관: 국토교통부)
비공인 민간자격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노인관련(중복명칭 포함 400여개) : 실버케어지도사, 노인미술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여가활동지도사, 노인건강관리사, 노인복지상담사 등 장애인관련(20여개) :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장애인여가지도사, 장애인전문상담사, 장애인승마지도사 등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일자리 참여와 장애인의 직무활동을 관라지 원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재 14개 시군에서 21명이 활동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은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고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소지는 사회복지사 및 직업상담사가 66.7%임
 - 직무지도원의 역할은 직장생활을 위한 대인 관계 지도, 핵심 직무지도, 작업태도,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적응 지도 등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음
- 전문적 직무지도서비스와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직무지도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거나, 별도의 교육 체계를 구성하여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준 연구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줄지 않는 노숙인, 지방정부 정책좌표 재설계 필요

지난 3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년) 이후 관련 종합계획이 최초 발표. 이에 따르면 노숙인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은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노숙인은 12,347명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대구·경기·부산·인천 등 대도시 집중 분포
 - 지역별 노숙인 현황 집계는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이 4,248명(34.0%)으로 노숙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10.3%), 경기(9.6%), 부산(7.2%), 인천(7.0%) 등 대도시 집중 기거하고 있음
 - 2011년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내 31개 사군 노숙인 규모는 수원(237명)과 성남(112명)이 경기도 전체 노숙인 규모(442명)의 약 80%를 차지. 광역 분포와 유사하게 도내에서도 대도시 집중되어 있으며,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로 철도역·지하상가·공원에서 기거

〈표 1〉 전국 시도별 노숙인 현황 (2014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 계	12,347	4,248	884	1,251	809	167	359	53	112
자 활	1,949	1,116	161	132	38	16	112	30	-
거 리	1,138	308	124	124	141	6	38	16	-
일시보호	899	636	38	22	11	-	20	7	-
재활요양	8,361	2,188	561	973	619	145	189	-	11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81	341	802	78	229	764	391	510	168
자 활	216	50	17	25	36	-	-	-	-
거 리	294	50	6	28	-	-	-	1	2
일시보호	93	4	22	25	9	1	-	-	11
재활요양	578	237	757	-	184	763	391	509	155

* 단위: 명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 지난 2005년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재활·요양시설 운영을 제외한 노숙인 지원 사업이 전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의지에 따라 사업의 양과 질이 좌우
 - 구체적 사업시행에 있어 노숙인 실태조사·거리노숙인 지원·자활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쪽방주민 지원과 같은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 편차가 매우 큼. 대표적으로 노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단순 시설운영 지원과 별도로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
 - 지역 간 관련 인프라 격차는 〈표 2〉와 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 사이에서도 노숙인 자활보다 단순 보호기능에 불과한 시설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공급 불균형 존재

〈표 2〉 전국 노숙인시설 현황 (2014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50	52	14	10	8	2	8	1	1	18	8	4	1	5	7	4	4	3
종합지원센터	10	2	2	1	-	-	1	-	-	3	-	-	-	-	-	-	-	1
일시보호	8	4	-	1	-	-	1	-	-	1	1	-	-	-	-	-	-	-
자활시설	64	27	5	5	3	1	4	1	-	10	4	1	1	2	-	-	-	-
재활요양	58	14	5	2	4	1	1	-	1	4	3	3	-	3	7	4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 단위: 개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 지금까지 노숙인 정책의 양적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탈노숙은 10.4%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
- 이에 중앙정부의 노숙인 복지 정책이 발생예방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질적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이에 맞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운영하는 것이 필요

03 FACT CHECK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만으로 안전할 수 있나?

- 어린이집은 학대사건들을 계기로 CCTV설치가 보편화된 반면, 요양원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이유로 CCTV설치가 안되어, 학대가 의심돼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뉴스* 보도
- 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4배 이상 급증한 노인요양시설의 증가(2007년 1,114개 → 2014년 4,841개)와 속도를 같이 함
- 폭행·감금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치매환자를 침대나 휠체어 등에 묶어 감금하거나 방치.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
 - 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 246건 중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는 155건으로 61.8% 수준. 이는 전체학대사건의 치매노인 비중(26.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CCTV 설치하는 학대 예방 효과, 학대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 마련 등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 가족과 지역사회가 요양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 가족의 시설안전지킴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장기요양음브즈맨제도 등을 도입
- 시설내 노인학대예방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감독 강화가 필요
 - 노인요양보호사 및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 요양시설 등급평가제를 인증제 등으로 전환하며, 학대발생 시설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

* 노인 인권은 괜찮나? 요양원 학대, 여전히 방치, (MBC뉴스데스크 1.30일자)

04 통계로 보는 복지

노인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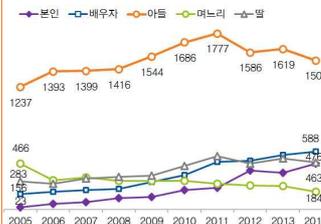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발생장소



학대 유형

정서적 학대	2,169(37.6)
신체적 학대	1,426(24.7)
방임	984(17.0)
경제적 학대	521(9.0)
자기 방임	463(8.0)
성적 학대	131(2.3)
유기	78(1.4)

학대행위자-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 건, %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2,038건에서 2014년 3,532건으로 1.7배 증가
 -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2,983건(84.5%)로 가장 많고 생활시설이 246건으로 7%를 차지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6%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는 24.7%에 해당
- 학대 행위자로서의 아들의 비중은 2005년 51.2%에서 2014년 38.8%로 감소하는 반면, 그 외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는 “며느리-딸-배우자”에서 “배우자-딸-며느리”로 변화
-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노부부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시기도 길어져, 배우자 학대 등의 노(老)-노(老)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부부 가구·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가 요구됨